|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기업의 임금〮급여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의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제34호<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임금 급여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 지출에 대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기업의 복리성 상여금 지출 세전공제 문제직원의 임금급여제도, 임금급여와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복리성 상여금이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임금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비 공제문제와 관한 통지> (국세함 [2009] 3호)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급여 지출로서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상술한 조건의 복리성 상여금에 동시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 국세함 [2009] 3호 문건 제3조 규정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전공제한다.2. 기업의 연도 정산납부 완료 전 지급한 1년치 임금급여의 세전공제 문제기업은 연도 정산납부 완료 전 직원에게 원천징수하여 실제 지급한 1년치 임금급여는 정확히 납부연도에 맞춰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3. 기업이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임금 부담 시 세전공제 문제기업은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한다: 협의서(계약서) 약정에 따라 직접 인력파견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노무비로 손금 산입해야 하며, 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급여 지출과 직원의 복리후생비 지출로 손금 산입한다. 그 중 임금급여 지출에 속하는 비용은, 기업의 임금급여총액의 기수에 계상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타 각 항목 관련비용 공제계산의 근거로 삼는다.4. 시행일자본 공고는 2014년도 및 이후 연도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본 공고 시행 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세무처리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의 납세소득액 세무처리문제에 관한 공고> (세무총국공고2012년제15호) 제1조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특별히 공고한다.국가세무총국2015년5월8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工资薪金和职工福利费等支出税前扣除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34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相关规定，现对企业工资薪金和职工福利费等支出企业所得税税前扣除问题公告如下：　　一、企业福利性补贴支出税前扣除问题　　列入企业员工工资薪金制度、固定与工资薪金一起发放的福利性补贴，符合《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工资薪金及职工福利费扣除问题的通知》（国税函〔2009〕3号）第一条规定的，可作为企业发生的工资薪金支出，按规定在税前扣除。　　不能同时符合上述条件的福利性补贴，应作为国税函〔2009〕3号文件第三条规定的职工福利费，按规定计算限额税前扣除。　　二、企业年度汇算清缴结束前支付汇缴年度工资薪金税前扣除问题　　企业在年度汇算清缴结束前向员工实际支付的已预提汇缴年度工资薪金，准予在汇缴年度按规定扣除。　　三、企业接受外部劳务派遣用工支出税前扣除问题　　企业接受外部劳务派遣用工所实际发生的费用，应分两种情况按规定在税前扣除：按照协议（合同）约定直接支付给劳务派遣公司的费用，应作为劳务费支出；直接支付给员工个人的费用，应作为工资薪金支出和职工福利费支出。其中属于工资薪金支出的费用，准予计入企业工资薪金总额的基数，作为计算其他各项相关费用扣除的依据。　　四、施行时间　　本公告适用于2014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本公告施行前尚未进行税务处理的事项，符合本公告规定的可按本公告执行。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若干税务处理问题的公告》（税务总局公告2012年第15号）第一条有关企业接受外部劳务派遣用工的相关规定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2015年5月8日 |